

예탁증권담보융자 약관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유화증권(이하 "회사"라 한다)에 증권거래계좌(이하 "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고객 중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한 예탁증권담보융자(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와의 대출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관계법규 등의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일반담보대출"이라 함은 고객이 예탁증권을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 ② "매도담보대출"이라 함은 고객이 예탁증권을 매도 주문하여 체결된 경우에 매도한 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출약정 및 해지)

- ① 고객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회사에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사의 영업점을 통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대출약정을 해지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에 의한 대출한도 내에서 계속하여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③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을 통하여 대출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환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하지 아니한 대출금을 상환한 이후에 대출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대출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회사와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제5조(대출금액) 회사는 대출을 할 때에 별지에서 정한 일정비율(이하 '대출비율'이라 한다)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제6조(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 ① 회사는 별지에서 정한 1인당 대출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 ② 일반담보대출의 담보대출기간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별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매도담보대출의 담보대출기간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예탁증권의 매도대금 결제일까지로 한다.

제7조(대출방법) 대출은 회사의 영업점방문 또는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 시 대출금은 해당 고객의 증권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담보의 제공)

- ① 회사가 대출을 할 때에는 고객에게 별지에서 정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담보를 받는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받는 담보는 고객의 증권계좌에 예탁된 증권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탁증권은 담보로 받지 아니 한다.
 1.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2. 한국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매매주문 이전에 매수 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증권
 3.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했거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증권
 4. 비상장주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
 -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
 - 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투자적격등급미만의 판정을 받은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증권 발행법인이 발행한 주권
 5. 비상장채권(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채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기업어음증권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채권
 7.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가 불가한 집합투자증권 및 신탁수익증권
 8. 주식워런트증권
 9.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것
 10.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중인 증권
 11. 증권시장 상장주권 중 위탁증거금을 100% 받는 종목
- ③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취득가액. 다만 해당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증가(당일 증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2.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증가(당일 증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3. 상장채권 및 공모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에 한한다) :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
 4. 기업어음증권 및 주가연계증권을 제외한 공모파생결합증권 :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
 5. 집합투자증권(제2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

제9조(질권의 설정)

- ① 일반담보대출의 경우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담보증권에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하 같다)을 설정한다.
- ② 매도담보대출의 경우 회사는 해당 매도증권에 질권을 설정한다.
- ③ 담보권은 질권이 설정된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권, 특별이자, 배당금, 배당신주, 무상주,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은 제11조에 의한 추가담보를 받을 때도 적용된다.

제10조(담보자산의 활용 및 담보의 반환) 회사는 고객이 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예탁자산을 대출금 및 대출 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담보를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타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추가담보의 제공)

- ①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회사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액의 총액의 비율이 별지에서 정한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고객은 별지에서 정한 담보의 추가납부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담보제공기간 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 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 ③ 제1항의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2조(대출의 상환 및 연장)

- ① 고객은 일반담보대출 대출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은 상환기일 이전에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상환할 수 있으며, 해당 담보증권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 ② 매도담보대출의 대출금 및 대출이자 등 당해 담보증권의 매도결제일에 매도결제처리에 의한 매도결제대금으로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자동 상환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사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

제공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영업일에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회사가 추가납부 요구시 제11조제1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 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할 수 있다.

- ⑤ 고객은 일반담보대출의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그 상환기일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담보가액이 제11조제1항에 의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거나 제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거나 담보대출가능 증권을 담보로 받는 경우에 상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임의상환 방법)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를 갚는데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 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 3. 고객이 대출과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 요구
 -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 요구
 - 4.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주식의 수량은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 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⑥ 고객은 제5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지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담보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다.

제14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별도 통지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에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위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채무를 갚아야 하는 날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1항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1항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를 회사가 받은 경우로서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⑤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대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다.

제15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 ① 고객은 별지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른 대출이자를 별지에서 정한 날(이하 “약정기일”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약정기일에 대출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을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금지사항)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다만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

1. 해당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주문 이외의 증권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및 대체 등 담보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

제17조(대출의 제한 및 중단)

- ① 회사는 별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담보대출약정 대상고객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한 고객 또는 담보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별지에서 정한 담보대출 약정 제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새로운 담보대출 및 추가 담보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관련법령, 금융 감독당국의 조치, 담보대출 총 한도 초과 등 그 밖의 회사가 담보대출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보대출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위 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진 경우 담보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 또는 대출신청일에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약관의 변경)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주소변경 등의 신고)

- ① 고객은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이 신고한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장소로 각종 알려야 할 사항 등을 통지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 한다.

제20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 (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이 약관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약관의 폐지 및 경과조치)①이 약관 제정과 동시에 (구)예탁증권 담보대출약관은 폐지한다. 다만, (구)약관에 의거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고객에 대하여는 상환전까지 (구)약관이 그대로 적용된다.

②(구)약관에 의거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은 상환 이후에는 본 약관에 의거 융자계약을 재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 제4조제4항과 관련하여 2011년 10월 1일 이전에 지급된 인지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 지>

1. 제5조 “<별지>에서 정한 일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 일반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액의 50%]
- 매도담보대출의 경우 [매도대금의 98%]

2. 제6조 제1항 “<별지>에서 정한 1인당 대출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 개인의 경우 [5억원]
- 법인의 경우 [10억원]

3. 제6조 제2항 “<별지>에서 정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일반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은 고객이 대출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80일]

4. 제8조 “<별지>에서 정한 일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대출시 담보비율은 [200%]

5. 제11조 “<별지>에서 정한 일정비율”과 “<별지>에서 정한 담보의 추가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담보유지비율은 [170%]
추가담보제공기간은 [추가담보제공요구일과 그 다음영업일]

6. 제13조 제4항 “<별지>에서 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담보부족반대매매(담보유지비율 170%)

담보부족 반대매매 수량산출식

$$\text{매도수량} = \frac{\text{담보부족금액}}{(\text{매도가격} \times \text{담보유지비율}) - \text{기준가격}}$$

*매도가격 = 하한가 - 거래제비용

<예시>

- ▶ 투자원금 400만원, 신용거래융자금 600만원, 10,000원인 주식매입, 질권수량 1,000주, 담보유지비율 170%

일자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D일 장중	11,000	11,000,000	183%	
D일 마감	8,500	8,500,000	142%	추가담보 납부요구
D+1일	하한가인 5,950원에 1,000주 모두 임의처분			

→반대매매수량은 1,000주 이며 임의처분 금액 595만원이 신용거래융자금 600만원보다 작아 추가로 5만원 입금 필요

* 위 예시는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로 제비용 포함시 손실규모는 증가할 수 있음

■ 미상환융자금 반대매매

1) 미상환융자금 반대매매 수량산출식

$$\text{매도수량} = \frac{\text{미상환부족금액}}{\text{매도가격}}$$

*매도가격 = 하한가 - 거래제비용

<예시>

- ▶ 투자원금 400만원, 신용거래융자금 600만원, 10,000원인 주식매입, 질권수량 1,000주

① 만기일 가격 > 매입가격

일자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만기일	12,000	12,000,000	200%	만기일 미상환 익일 반대매매
D+1일	전일 증가 하한가인 8,400원으로 산정, 신용거래융자금 600만원 상환을 위해 715주 임의처분 수량 산정. 결제일에 남아있는 질권수량 현금상환 처리			

② 만기일 가격 < 매입가격

일자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만기일	5,000	5,000,000	83%	만기일 미상환 익일 반대매매
D+1일	전일 증가 하한가인 3,500원으로 산정, 신용거래융자금 600만원 상환을 위해 1,000주 임의처분 수량 산정. 결제일에 250만원 추가 입금 필요			

* 위 예시는 거래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로 제비용 포함시 손실규모는 증가할 수 있음

7. 제13조 제5항 “<별지>에서 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정계좌내에 대출이자율이 높은 것 2) 동일이자율일 경우 만기 최근 도래 대출건 3) 동일 대출건내에 거래소 최근 매입 종목 4) 매입일자 같을 경우 거래소 종목 중 종목번호 빠른 것 5) 코스닥 최근매입종목 6) 매입일자 같을 경우 코스닥 종목 중 종목번호 빠른 것 |
|---|

8. 제13조 제6항 “<별지>에서 정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임의상환처분일 당일 08:20까지

9. 제15조 “<별지>에서 정한 이자율” 및 “<별지>에서 정한 날”은 다음과 같다.

[이자율]		
	대출일수	이율
일반담보대출	6.5%	
	연체이율	연체 당시 약정이자율 +3%
매도담보대출	적용이율	연 10.0%
	연체이율	연체 당시 약정이자율 +3%
이자납입일은 [매월 첫영업일]		
* <보통년(365일) 및 윤년의 경우 366일>		

10. 제17조 “<별지>에서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2.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등의 사실이 등록된 자(법인포함) 3. 미수금 보유고객 |
|--|